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82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909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조례 제6910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고 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영종 A11BL) ····· 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7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980호 2022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연장 공고 ····· 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990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99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 14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3호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4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5호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3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6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5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7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8호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94호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0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95호 인천광역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98호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33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조 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인천광역시조례 제6909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관, 홍보담당관”을 “대변인, 감사관, 공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조직개편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대변인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변경함.(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인천광역시조례 제6910호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제2호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하도록 신설함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영종 A11BL)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1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하늘도시 A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유승종합건설 대표자 민광옥

인천광역시 논현동 46번길 51(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7층 내)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5-1번지(영종 A11BL)

나. 대지면적: 17,656.8㎡

다. 연 면 적: 42,726.6224㎡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4개동, 243세대(83A형-172세대, 83B형-71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5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1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2. 11. 20. ~ 2025. 8. 20.

5. 변경내용

- 건축면적/연면적/건폐율 변경(단위세대 면적, 주민공동시설 및 지하층 레이아웃 변경)
- 지하주차장 층고 조정 등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7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2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국제업무지구 3공구 E5BL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성명 · 주소 등**(변경)
   :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 배일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2번지
   나. 대지면적: 19,196.26㎡
   다. 연 면 적: 96,570.99㎡
   라. 주택의 규모
   - 공동주택 : 총 351세대 (2개동, 지하2층~ 지상40층)
     · 80형 70세대, 102형 68세대, 110형 69세대, 119A형 68세대, 119B형 68세대, 170형 2세대, 171형 2세대, 193형 2세대, 198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 판매시설: 2개동 (지하2층~지상3층)

4. **사업시행기간**: 2019. 08. ~ 2023. 01. (변경 없음)

5. **변경사항: 진출입 차로 및 조경 등**

6.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사항** (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980호

2022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연장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2022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기간을 연장 공고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1. 21.

인 천 광 역 시 장

□ 지원조건 ※ 배기량(cc) 무관

① 인천광역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자
- 차령이 일반택시 2년 이상, 개인택시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폐차하는 택시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대·폐차로 기존 차량 등록 말소 후 신차 등록('22. 1. 1.이후) 완료자 * 소급지원

□ 사 업 량 : 2,600대(개인택시 1,400대, 일반택시 1,200대)

□ 사업기간 : 2022. 2. 14. ~ 12. 23. ※ 예산 또는 사업량 소진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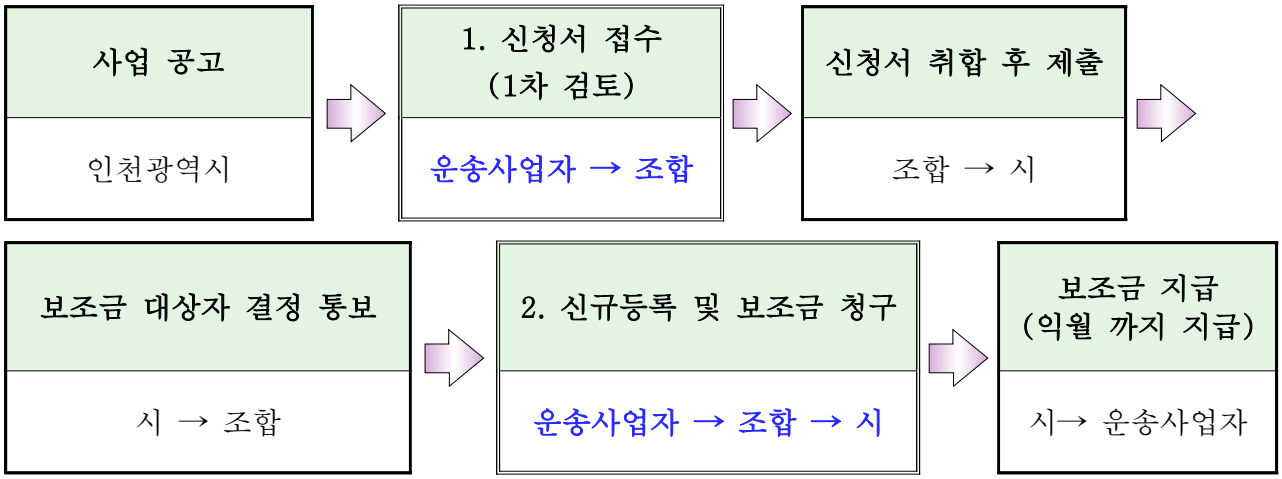
(당초기간 : 2022. 2. 14. ~ 11. 30.)

□ 신청접수 :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직접 방문 접수

□ 보조금 지원기준 : 1대당 1,500천원

※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을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지원 절차



□ 제출서류

1.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①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② 차량등록증 사본(기존차량)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④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가능)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된 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2.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① 신규등록증 사본
② 통장 사본
③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④ 신규 등록차량 사진

□ 보조금 지급

인천광역시는 조합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익월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참고]「별지 제1호 서식」

확인번호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사업 신청서			
소유자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개인, 일반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 )CC		
	차명 및 형식	/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등 2.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별지 제2호서식 」

<table>
<tr><td>확인번호
</td><td colspan="4">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
(회사명)</td><td></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전화번호</td><td></td><td>소 속</td><td>개인, 일반</td></tr>
<tr><td rowspan="4">신규등록
자 동 차</td><td>자동차번호</td><td></td><td>차대번호</td><td></td></tr>
<tr><td>자동차제원</td><td colspan="3">□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 )CC</td></tr>
<tr><td>차명 및 형식</td><td colspan="3"></td></tr>
<tr><td>보조금신청금액</td><td colspan="3">원 (₩)</td></tr>
</table>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500%)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대·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4. 신규등록차량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 · 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등

◈ **(수집·이용목적)**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중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99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상호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에코푸루스㈜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37호)	박규용	2020.10.14.	상호 변경	오토바디(주)	에코푸루스(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99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11.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면적(㎡)
신규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36,689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1) 토지이용 기본계획(안)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2만㎡)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구획하고 거점사업으로 통합계획

2) 정비기반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구분	계 획	비고
정비기반시설	◦ 소로3-1호선(L=23m, B=5) 폭원 1m 확장 ◦ 소로3-A호선(L=90m, B=6) 신설 ◦ 어린이공원(A=3,900㎡) 신설	

3) 교통처리 기본계획(안)

○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하도록 하여, 지상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 소로 3-1호선의 폭원을 5m에서 6m로 변경하고 소로 3-A호선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구역외 일부 필지의 진입도로를 개설

4)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689	-	36,689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36,689	감)36,68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36,689	36,689	1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6,689	30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로 인한 용도지역 상향

나)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

3. 공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22. 11. 23. ~ 2022. 12. 7. (15일간)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주거재생과, ☎ 032-440-3487)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재생과, ☎ 032-560-4592)

3)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심의 등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의견서

붙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의견서

성 명	(인)	연락처	
거주지 주소			
의 견			
제출일	2022년 월 일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3호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 및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조례로 위임된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2753, FAX 440-86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원)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하되, 상근이사는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사에 임명된 자로 하며, 그 외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료원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출자) ①의료원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3조(출자) <삭 제>
②시는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임원) ①의료원의 임원은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삭 제>
②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삭 제>
③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료원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관계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 감사(監事)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건강보건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 광 찬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4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 및 시민중심의 안정적·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5조)

나. 주민의 권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예산학

교 운영,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신설)

다. 총회,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6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40-2242, 팩스 032-440-8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재정건전성을 증대하는 등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

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관 공동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담당 부서장과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직무소홀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시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15개 이내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총회) ①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③ 총회는 총회의 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주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출석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구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

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역할은 잔여 임기동안 이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기능을 직접수행함에 따라 인건비 등 소요예산 절감

4. 작성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시 현 정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5호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원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위원 임기·해촉,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라. 심의회 운영 및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입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시민봉사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배성천(☎ 032-440-2582, fax 032-440-8647, E-mail bsc7200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접수된 청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 원칙)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이 맡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청원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심의회 개최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5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 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ㅇㅇㅇ 귀하

<관계법령>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

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법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청원법 시행령」제3조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등을 제정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이 필요하지 않음.

4. 작 성 자

○ 행정국 시민봉사과장 이 윤 정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6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2021. 7.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7장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구 보조사업에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신설함.(안 제3조 신설)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신설)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신설)

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신설)

마.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사.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심의사항, 운영,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간사, 회의록의 비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윤경(전화번호 032-440-2266, 팩스번호 032-440-8632, 전자메일 0225yk@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복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2. 문화·체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3. 일반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산업·경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5. 도로·교통·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6. 공원·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7. 재난·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조율

을 달리하거나 정액보조 또는 전액보조 할 수 있다.

제4조(시책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교부 결정 등의 통지)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

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신

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100분의 30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지방보조금을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의결사항을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앞에 위치한 “제7장 지방보조금 관리”를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

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

서를 적어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에 등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사업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의 내용
3.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역
4. 그 밖에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등의 공표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7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지방채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채권 매입의무를 완화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상향 조정

- 2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전주원(전화번호 032-440-1674,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jjwon28@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

(2) 연락처 : 전화)032-440-1674, FAX)032-440-8633, 이메일) jjwon28@korea.kr

다.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제출자	조례 개정안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 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별표 1의 4호 매입기준 개정

-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2023년 3월 1일부터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3년 3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 계약체결을 통해 발행된 채권금액 41억 원 가량이 매년 축소됨을 전제로 함.

나. 추계 결과

-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수정

(단위:억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채권매출	△34	△41	△41	△41	△41	△198
	융자금회수 등	-	-	-	-	-	-
	소계(a)	△34	△41	△41	△41	△41	△198
세출	기금융자	-	-	-	-	-	-
	예치금 등	△34	△41	△41	△41	△41	△198
	소계(b)	△34	△41	△41	△41	△41	△198
재원조달(a-b)		-	-	-	-	-	-

- 고려사항 : 지역개발기금의 축소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져 채무액 감소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향후 5년간 기금 예치금 활용)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억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채권매출	△34	△41	△41	△41	△41	△198
	융자금회수 등	-	-	-	-	-	-
	소계(a)	△34	△41	△41	△41	△41	△198
세출	기금융자	-	-	-	-	-	-
	예치금 등	△34	△41	△41	△41	△41	△198
	소계(b)	△34	△41	△41	△41	△41	△198
재원조달(a-b)		-	-	-	-	-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8호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 2. 5.)됨에 따라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건축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보경(☏ 032-440-4763, Fax 032-440-8681, 전자메일 lbk062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올바른 운영과 집합건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집합건물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리·권한과 의무 안내·지원
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 지원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을 말한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민간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합건물

2.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시 및 군·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합건물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안내

2.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홍보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

4.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운영

5. 관계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 및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7. 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① 시장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등 관리의 지원(이하 “관리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리단 집회
2.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3. 규약 설정 및 변경
4. 관리비 및 회계 운영
5.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6. 집합건물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등

③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지원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8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관리지원 신청) ①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집합 건물을 관리지원할 단원(이하 “지원단원”이라 한다)을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단원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단원의 회피·기피) ① 지원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지원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단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단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지원단원이나 지원단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지원단원의 해당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단원에게 공정한 해당 관리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피 보고 또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을 해당 집합건물의 지원단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단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지원 중단결정)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관리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지원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등 관리지원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지원단원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을 완료하였거나 제13조에 따른 관리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완료일 또는 종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자료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의무) 지원단원은 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구분	□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전화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지원신청 분 야	□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신청내용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결과보고서

1. 신청인	
2. 지원분야	☐ 관리단 집회 ☐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 규약 설정 및 변경 ☐ 관리비 및 회계 운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 기타( )
3. 자문내용	

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집합건물관리위원단 위원 수당, 공무원·집합건물 관계자 대상 교육 및 교육용 동영상 제공,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발간

나. 관련조문: 제3조(집합건물 지원사업), 제4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제5조(교육·홍보), 제6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제14조(수당)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3조(집합건물 지원사업)는 안 제4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안 제5조(교육·홍보) 및 안 제6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비용은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 각각 비용 추계

○ 안 제4조(집합건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50개동 내외로 지원하는 비용 추계

○ 안 제5조(교육·홍보)는 집합건물 관련 전문 기관인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용역 비용으로 추계하였고, 제4호의 홈페이지 구축·운영비용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관리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비용 추계에서 제외

○ 안 제6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안 제14조(수당)는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 수당으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5년 간 21.5억 원**

○ **집합건물 안전점검 비용: 2억 원**(시,군·구비 매칭*)

- 1동당 안전점검비용 4,000천 원×50개동 내외

* 시 50, 군·구 50

○ **교육 및 교육용 동영상 제공: 40,000천 원**

-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용역 비용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발간 비용: 20,000천 원**

-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용역 비용

○ **집합건물관리위원단 위원 수당: 30,000천 원**

- 월 2회 5명 내외 구성 운영 250천 원*×5인×2회×12월

* 2시간 이내: 200천 원, 2시간 이상: 300천 원의 평균

다. 재원조달방안: 지방세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도시계획국 건축과장 손병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	-	-	-	-	-
	소계	-	-	-	-	-	-
세출	안전점검 비용	100,000	150,000	200,000	200,000	200,000	850,000
	교육 관련 비용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발간 비용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집합건물관리위원단 위원 수당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	190,000	240,000	290,000	290,000	290,000	1,300,000
재원 조달		290,000	390,000	490,000	490,000	490,000	2,150,00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190,000	240,000	290,000	290,000	290,000	1,300,000
	일반회계	190,000	240,000	290,000	290,000	290,000	1,30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100,000	150,000	200,000	200,000	200,000	85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94호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함.

나. 인천광역시에서도 2020년 73건에 불과했던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2022년(8월 기준) 3배 이상 증가한 248건에 달하는 상황임.

다. 이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마.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

바.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

사.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아.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의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함. (안 제9조)

자.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 종사자들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enknigh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업, 교육, 홍보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9조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스토킹 피해 여성(1년 약 400명) 및 상담사(1명)

- 스토킹 교육·홍보 대상(인천 시민)

○ 지급시기 : 매년

○ 비 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1,5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비용(백만원)	750	150	150	150	150	150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1.5억원

○ 세부내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1,5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필요인력(명)	5	1	1	1	1	1
사업비 합계 (백만원)	**750**	**150**	**150**	**150**	**150**	**150**
사업비 (백만원)	30	6	6	6	6	6
인건비	220	44	44	44	44	44
홍보비	250	50	50	50	50	50
교육비	250	50	50	50	50	50

- 사업비 6,034,000원 × 1식 = 6,034천원
  * 수사·상담·법률·의료 지원 및 부대비용
- 인건비(상담사) 3,663,800원 × 1인 × 12월 = 43,966천원
  * 지급금액기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 홍보비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 교육비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 피해자, 상담사,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백보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교육·홍보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일반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95호

인천광역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이 결합된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을 명문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지원을”을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다. 계획의 수립 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신설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enknigh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을”을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를 지원하기”를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을”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지원 사업”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지원”을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지원”을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여건조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 ----------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 ----------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
<신 설>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9조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 제9조에 따른 ---------- ----------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 ----------.
제11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	제12조(조사 및 연구) ---------- ----------

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지원과 의료관광 --.
제12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지원과 의료관광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유치와 의료관광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

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현재 의료관광 분야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의거, 의안 발의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건강보건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98호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나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 와 같은 참사에 대응이 어려움

나. 이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와 더불어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여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에

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행사의 정의에 주최·주관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재난 및 사고가 예측되는 경우의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함(안 제9조)

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배치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옥외행사 질서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gyri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7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등의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

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군수·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안전조치)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협력)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공연법」 □ 「공연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

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에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옥외행사에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 측에서 안전관리 요원 배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경찰 협조 요청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어느 정도 빈도로 안전요원 배치할지 예측 불가능.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장 윤재호